건설기계 운행 안전

1. 건설기계

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(건설기계 관리법 제2 조) 것으로 건설공사를 보다 빠르고 쉽게, 보다 저 렴하고 확실하게,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기계의 총칭이다.

일반적으로 건설기계는 토사, 암석, 콘크리트, 아 스팔트 등의 작업을 목적으로 트랙터의 전후에 작업 장구를 장착하고,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자동차나 공작기계 등에 비하여 매우 가 혹한 조건에서 작업하게 된다. 따라서 충격이나 진 동 등 큰 하중을 많이 받게 되므로 기계의 특성상 내 구성, 운전성, 정비성, 신뢰성, 적응성 등의 조건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.

2. 건설기계의 재해 형태 및 발생원인

가. 건설기계의 전도

- (1) 연약지반 위에서 받침판을 사용하지 않고 운 전했다.
- (2) 연약한 굴착장소에서 하중이 편중해서 전락했다.
 - (3) 기계의 성능을 무시하고 사용했다.
 - (4) 운전결함(급선회 등)

나. 건설기계로부터의 추락

- (1) 승강자세가 나빴다.
- (2)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.
- (3) 유전이 난폭했다
- (4) 운전자 이외의 자가 승차했다.

다. 건설기계에서의 협착

- (1) 감시인이 없었다.
- (2) 차량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기를 했다.
- (3) 운전결함
- (4) 출입금지를 무시하고 출입했다.

라. 크레인의 도괴 또는 전도

- (1) 규정 이상의 중량물을 실었다.
- (2) 운전결함(급선회, 고속운전 등)
- (3) 크레인의 설치 방법이 나빴다.
- (4) 이동식크레인을 연약지반상에서 지반 보강 재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했다.

마. 리프트에서의 추락

- (1) 신호가 철저하지 않았다.
- (2) 작업자세나 작업동작이 나빴다.
- (3) 하대에 타고 승강했다.
- (4) 안전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화물을 취급했다.

바. 건설기계로부터의 감전

- (1) 감시자가 없었다.
- (2) 통전되고 있는 전선에 철선, 로프 등이 접촉 되었다.
- (3) 통전되고 있는 전선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.

사. 인양화물의 낙하

- (1) 들어올리는 화물이 다른 화물에 충돌했다.
- (2) 감시인(신호자)이 없었다.

- (3) 결속 방법이 나쁘고 화물이 빠졌다.
- (4) 결속 로프가 절단되었다.

3. 건설기계의 사용전 확인사항

가. 엔진시동전

- (1) 누수, 누유 흔적 및 유압장치 작동여부를 확 이하다
- (2) 무한궤도, 타이어, 기계장치 이상유무를 확 이하다.
- (3) 근로자, 장애물 등 작업장 주변상황을 확인하다
- (4) 변속레버, 주클러치의 중립위치 여부를 확인 한다.
 - (5) 감압레버가 감압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.
- (6) 연료레버의 저속회전(1/4~1/2) 위치에 있는 지 확인한다.
 - (7) 브레이크 레버가 주차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.
- (8) 연결차량의 연결상태 및 분리방지장치를 확 인하다.
- (9) 부정차용 굄목 및 안전표지판 등 준비상태를 확인한다.

나. 운전자의 건강상태 확인

다. 운전석 승강시 트랩 및 사다리 이용, 뛰어내리는 행위 금지

라. 엔진시동후 유의 사항

- (1) 엔진 냉각상태에서 급가속을 금지한다.
- (2) 엔진시동 후 저속회전하면서 다음 사항을 확 인한다.
 - ① 압력계 및 수온계 게이지 작동상태
 - ② 충전상태
 - ③ 경보등 점멸상태
 - ④ 누수. 누유 및 기타 이상유무

- (3) 전후진 시동전 주변 근로자 및 장애물을 확 인하고 주의하여 운전한다.
- (4) 시야 미확보시 유도원 배치 또는 장비에서 내려 직접 확인한다.

4. 건설기계 작업시 유의사항

- (1) 주행로의 지형, 지반 등의 미끄럼 위험을 확인하다.
- (2) 이상소음, 누수, 누유 또는 부품, 조작레버 등의 이상시 즉시 원인확인 및 정비한다.
- (3) 차량계 셔블 발진시 버켓레버의 안전장치를 풀고 지상으로부터 40[cm] 정도를 유지한다.
- (4) 정해진 주행속도를 준수한다.
- (5) 언덕하강시 연료레버 저속위치 및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.
 - (6) 부하 및 주행속도를 줄여야 할 경우
 - ① 언덕을 올라왔을 때
 - ② 절벽에서 사토할 때
 - ③ 토사를 싣기 위해 덤프트럭에 접근할 때
- (7) 방향전환시 전진방향측 클러치를 완만히 전 환, 급선회시 전진방향측 브레이크를 작동한다.
- (8) 고속선회 또는 암반 및 점토상에서의 급선회 시 무한궤도가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(9) 내리막 경사지에서 방향전환시 브레이크가 충분히 걸리는 위치까지 레버를 이동한다.
- (10) 기계의 작업범위내에 타작업자 출입을 금 지하다
- (11) 주행중 상부 몸체가 선회하지 않도록 선회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.
- (12) 전선 밑 통과시 유도자 신호에 따르고, 저속 주행하며, Boom이나 로프 등 전선과의 이격거리 를 최소 2[m] 이상 유지한다.
- (13) 경사지에서 하중을 실은 채로 오르내릴 때 에는 버켓을 낮춘다.
 - (14) 연약지반. 장애물 통과시 전도 주의 및 깔

판 보강 후 통과한다.

5. 건설기계 작업종료 후 정치시 유의 사항

- (1) 지반상태, 우기시 침수위험 여부 등을 고려 하여 기계 정지 장소를 선정한다.
- (2) 버켓을 지면에 내려놓고 브레이크를 완전히 걸되, 경사면에 세울 때에는 굄목을 사용한다.
- (3) 선회잠금장치, 주차용 브레이크와 붐, 호이 스트, 드럼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건다.
- (4) 엔진 정지 중에는 붐과 버켓이 움직이지 않 도록 한다.

6. 건설기계 수송시 유의사항

- (1) 건설기계 수송시 일반적 주의사항
- ① 원칙적으로 전용 운반기계로 수송
- ② 건설기계 상하차시 성토의 경우
- 성토면 폭은 건설기계의 폭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
- 성토면의 경사는 가능한한 완만히 조성
- 기계 상차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충분 히 다짐.
- ③ 발판을 이용하여 상하차시 유의사항
- 기계중량을 고려하여 철제판을 사용하고 단단 히 고정
- 구배는 10°~15° 정도로 함.
- 운반기계와 건설기계의 중심이 일치되게 하고 반드시 발판으로 오르내리게 함.
- 발판은 건설기계 상하차시 휘어지지 않도록 각재 등으로 보강
- 건설기계를 와이어 로프로 끌어당겨 올릴 때 에는 작업자 출입금지
- (2) 운반기계에 건설기계 적재시 주의사항
- ① 적재전 확인사항
- 운반기계를 적재하기에 알맞은 위치에 둠.

- 운반기계의 최대적재하중 확인
- 운반기계의 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하고 운 반기계의 바퀴에 굄목을 사용하여 고정
- ② 파워셔블, 백호우 등은 붐을 내리고 버켓 등을 적재함 위에 내려놓고, 이 경우 도로의 상 태를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
- ③ 발판을 오르내릴시 유의사항
- 원칙적으로 전진방향으로 오르고, 후진으로 내려옴.
- 발판위에서 건설기계 방향전환을 금하고, 방향이 잘못된 경우 반드시 지상에 내려서 교정후 다시 시도
- 가능한한 서서히 운전하고, 배토판이나 버 켓. 붐 등이 하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
- 운반기계에 적재시 하중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
- 발판위로 오르내릴 때 유도자의 신호 준수
- (3) 운반기계에 적재한 후 주의사항
- ① 적재물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적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반기계에 고정
- ② 수송중 흔들림 방지를 위해 바퀴(또는 궤도) 양측에 굄목 등을 받치고 체인 등으로 고정
- ③ 붐, 암 등의 장치는 제한높이 이내로 낮추고 버켓, 리퍼 등은 운반기계 적재함위에 고정
- ④ 적재기계는 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정지 후 전 원을 끄고, 주클러치를 넣은 위치에서 연료레 버를 전폐위치에 둠.
- (4) 작업장치의 장착 및 취급시 주의사항
- ① 해당작업에 경험이 많은 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 수행
- ② 정해진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
- ③ 암, 붐 등이 하강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안 전지주, 안전블럭 등을 사용
- ④ 고중량 작업장치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고. 후크걸이 작업은 유자격자가 수행

(5) 운반기계의 이동시 운반화물 위에 사람이 올 실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라가는 것을 금지

7. 건설기계 안전장치 확인사항

- (1) 전조등
- (2) 경보장치
- (3) 헤드가드(Head Guard)
- (4) 붐 전도방지 장치
- (5) 붐 기복정지 장치
- (6) 붐 권상드럼의 역회전방지 장치
- (7) 기타 안전장치

8. 건설기계 일반 운전수칙

- (1) 건설기계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유자격 정비 공에 의해 검사받고 시운전을 받아야 한다.
- (2) 안전한 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.
 - (3) 절차에 따라 예방정비를 하여야 한다.
- (4) 고장난 기계는 완전히 수리할 때까지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5) 기계나 장비의 최초 설치시에는 사전답사하 여 도로 및 구조물의 상태를 파악하고, 강도와 여 유고 및 폭원의 여유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기할 수 있을 때 운전한다.
 - (6) 지정된 운전원만이 운전하여야 한다.
 - (7) 장비나 화물위에 올라타는 일은 금해야 한다.
- (8) 작동중인 기계나 장비에는 뛰어내리거나 올 라가는 일은 금하여야 한다.
- (9) 운전원이 있어야 하는 기계나 장비는 가동중 운전원 없이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.
- (10) 작업자외의 사람이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안전하게 잠가 두어야 한다.
- (11) 안전속도 및 허용부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(13) 수리는 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.
- (14) 불도져, 스크레파, 크레인 등의 삽날이나 버 킷 등은 작업하지 않을 때에는 내려 두어야 한다.
- (15) 수리. 주유 등이 끝나면 곧 뚜껑이나 안전보 호장치를 다시 덮어 두어야 한다.
- (16) 떨어지거나 날아드는 물체 기타 유사한 위험 을 막아줄 적당한 방호시설을 운전석에 갖추어야 하며, 유리를 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하여야 한다.
- (17) 장비가 공로상으로 지나갈 때는 운행 방향 신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.
- (18) 궤도상에서 움직이는 기계나 장비는 초과 운행을 차단하는 바리케이트나 벽 등의 시설을 갖 추어야 하다.
- (19) 기동성이 없는 기계 및 장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안전하게 놓아둔다.
- (20) 움직이는 기계나 장비의 야간작업시에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21) 야간에 작업중인 장비가 공로상에 주차해 있거나 다른 장비 및 차량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 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황색등을 달아야 한다.
- (22) 초과속도 및 과대부하에 대한 제동조절장 치가 없는 장비에는 안전운행속도 및 허용하중을 운전석에 써 붙여야 한다.
- (23) 시동을 걸어둔 채 급유하는 일은 절대 없어 야 한다.
- (24) 완전히 정차하기전에 견인차량과 견인물사 이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.
- (25) 끌거나 들어올리기 위한 장치는 인장력에 대하여 안전하게 확실히 끼어져 있는지 검사하여 야 한다.
- (26) 건설기계 운전자의 시계불량 사각지대 작 (12) 수리 및 주유 중에 우연히 움직이지 않게 확 입시 반드시 신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 🥝